

의안번호	2219820
의 퇴 인	김문수의원
회 답 일	2026.7.23.
추계번호	26D3378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의3 ¹⁾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“인구과소지역”으로 정의함	의무규정
2	안 제7조(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	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고려하도록 함 ※ <u>현행법은 시·도의 인구감소지역</u>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고려하도록 규정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조(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	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²⁾, 인구감소지

1)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19819호, 김문수의원 대표발의)」 제2조(정의) 1.~12의2. (생략)
12의3. “인구과소지역”이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·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·고시하는 읍·면·동·리 또는 이를 합치거나 분할한 지역을 말한다.

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, 이때 시·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고려하도록 함³⁾

□ 개정안은 시·도지사가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」에 따라 지정된 ‘인구과소지역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‘인구과소지역’ 지원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다만,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○ 우선,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」에 따라 ‘인구과소지역’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

– 개정안은 김문수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1981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, 해당 개정안은 인구과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도 ‘인구밀도가 매우 낮고’, ‘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’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중에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’ 지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
○ 또한, 개정안에 따라 향후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포함될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어려움

2) **현행법 제6조(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**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(이하 "시·군·구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~⑦ (생략)

3) **현행법 제7조(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**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(이하 "시·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,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
2. 시·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

(이하 생략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